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채 인 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서윤기 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
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
고자 함입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관람료 납부자가 관람을 취소할 시 관람료 반환 규정을 신설
함(안 제5조제4항).

나. 관람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함
(안 제6조제1항제5호).

다. ‘유모차’를 ‘유아차’로 함(안 제14조제3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위원님 여러분!

○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